

의안번호	2215543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6.3.4.
추계번호	25B716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6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 미첨부(제5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미대상(제6항)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시책에 대한 협조와 근로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노력 의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³⁾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수립될 시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3) 참고로, 지방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사업은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종료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